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95
----------	-----

2022. 3. 25.(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김기창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2년 3월 3일

다. 회부일자 : 2022년 3월 3일

라. 상정일자 : 2021년 3월 16일

- 제3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기창 의원)

가. 제안이유

- 도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보다 효과적인 소방정책의 추진과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소방발전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 소속하에 소방발전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 위원의 자격 및 임기, 제척·기피·회피, 추천 및 위촉, 해촉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에서 안 제11조)

3. 검토보고 요지(노형우 전문위원)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행정관청에 대하여 구속력이 없는 자문역할을 하는 위원회를 설치 하는 것으로, 그 성격상 도민의 소방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의사 결정권자가 위원회를 통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견해를 구하기 위함이며, 소방발전위원회의 결정이 행정관청을 법적으로 기속하지 않음을 고려할 때, 견제와 균형의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조례 제정의 정당성에 관하여 살펴보면,
 - 도민에 대한 소방서비스 향상과 효과적인 소방정책 추진을 위하여 소방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 하는 조례로

-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과 제116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므로 조례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 소속하에 소방발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3조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
- 안 제4조 및 제5조는 위원회의 구성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8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위원의 자격 및 임기, 제척·기피·회피, 추천 및 위촉, 해촉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조례안예고('22. 3. 7. ~ '22. 3. 14.)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 관련부서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타 “특이한 사항”은 없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라. 검토의견

- 「충청북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도민에 대한 소방서비스 향상과 효과적인 소방정책 추진을 위하여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소방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와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충청북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기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95
----------	-----

발의연월일 : 2022년 3월 3일
발 의 자 : 김기창, 서동학, 박우양,
연철흙, 전원표, 황규철,
임영은

1. 제안이유

- 도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보다 효과적인 소방정책의 추진과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소방발전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 소속하에 소방발전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 위원의 자격 및 임기, 제척·기피·회피, 추천 및 위촉, 해촉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에서 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 협 의 : 충청북도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 조례안 예고 : 2022. 3. 7. ~ 2022. 3. 14.(의회 홈페이지)

충청북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민을 위한 소방정책의 개발·개선 및 추진 등 자문역할을 담당하는 소방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① 충청북도 소방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충청북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설치할 수 있으며, 주요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명칭은 “충청북도 소방발전위원회” 또는 “○○소방서 발전위원회”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할 수 있다.

1. 충청북도 소방본부(소방서)의 기본정책
2. 충청북도 소방본부(소방서)의 장·단기 발전방향
3. 소방·안전에 관한 새로운 정책 및 개선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방행정, 재난예방 또는 구조구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2. 해당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모범이 되는 주요 인사로서 소방 관련 정책의 개발·개선 및 추진 등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은 사람
3. 그 밖에 소방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장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④ 위원장, 부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은 각 분과위원회에 소속된다.

제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소방행정분과위원회
2. 재난예방분과위원회
3. 구조구급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할 경우 소방관서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소방관서장, 기능별 부서장, 심의안건 관련 해당부서장, 분과별 담당자 등이 참석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은 소방관서장에게 통보한다.

제7조(임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주재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특별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은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소방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8조(위원의 자격 및 임기)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임명한다.

③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기관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추천 및 위촉) ① 소방관서의 각 부서장은 해촉 위원 발생시 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②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을 심의를 거쳐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소방관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또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질병·심신장애·국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12조(지원) 소방관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운영에 관한 비용을 집행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충청북도지사는 소방발전 및 소방안전에 크게 이바지 한 법인·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호, 시행 2021. 1. 13. 시행]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80호, 시행 2021. 1. 5.]

제80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이하 “자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1조(자문기관의 구성) ①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2조(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충청북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충청북도민을 위한 소방정책의 개발·개선 및 추진 등 자문역할을 담당하는 소방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2. 비용발생 요인

- 발전위원회 안전 심의 및 회의 참석 수당 등 발생

3. 관련조문

- 충청북도 소방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3조(지원)

4.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소방활동의 효율성 제고 및 새로운 소방정책 발굴, 안전문화 확산 기여
- 소방발전위원회 안전심사 및 회의 수당

※ 소방본부(10명) 및 12개 소방서(각 10명) * 총 130명

- (수당 1인) 100천원 × 130명 = 13,000천원

- (회의 연 4회) 13,000천원 × 4회 = 52,000천원

☞ 각종위원회 수당지급 기준(제5조 관련)

나. 추계 결과 : 22년부터 5년간 260,000천원 소요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100%)로 위원회 안전 심사 및 회의 수당 지급

